

2021년 제10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397-2(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10.21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397-2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82,191.79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1,168.84㎡	건폐율	13.59%	층수 지하 : -2층 / 지상 : 36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부대복리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2동
	최고높이	109.65m	용적률	203.78%	연면적 합계 263,442.39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성능기반설계를 수행하시고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보된 상태에서 구조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착공 전에 본 위원회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(김남희 위원)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지하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설계로 SCW공법을 적용하고 앵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, 본 현장은 해안을 매립하여 조성한 지역으로 퇴적토층 위에 매립토층이 있어 지반이 연약하고 지하수위가 높아 깊은 심도의 굴착공사 중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계층안전관리가 필요하며, 이때 작업인부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동화안전관리시스템 또는 현장위험 경고 장치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1년 제10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중구 운남동 1709-1(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10.21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인천영종피에프브이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				
	지 번	1709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72,300.5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9,735.6756㎡	건폐율	13.46%	층수 지하 : -1층 / 지상 : 25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부대복리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3동
	최고높이	72.05m	용적률	189.70%	연면적 합계 196,387.8527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벽체 수평철근을 구조도서에 반영하여 전체적인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착공 전에 본 위원회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(김남희 위원)			
심의내용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흙막이 설계로 SCW공법을 적용하고 H형강의 간격을 1800mm로 설계하고 앵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본 현장은 해안을 매립하여 조성한 지역으로 지반이 연약하고 지하수위가 높아 굴착공사 중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계속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이때 작업인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동화안전관리시스템 또는 현장위험 경고 장치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